

교육부장관 귀하
학 교 법 인 이사회 귀중
監 査 報 告 書

2020회계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붙 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임회인) 서명 날
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
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이
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갈음함.

학 교 법 인 선 목 학 원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 2003. 2. 25)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 재산상
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	-	2	
4. 부속병원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계	-	-	2	

- 붙임 : 1.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1년 5 월 일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 사 여 운 동 (인)

감 사 나 정 민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3098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1년 5 월 일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이 사 장 조 환



피감사 기관장

2021년 5 월 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총 장 우 동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2020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 5.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감 사 여 윤 동 (인)

감 사 나 경 민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 무 국 장

성 명 이 중 현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일반업무회계] - 해 당 사 항 없 음 -	
[수익사업회계] - 해 당 사 항 없 음 -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u>선목학원</u> 이사장 조 환 길 작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 5.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감 사 여 윤 동

감 사 나 정 민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 무 처 장

성 명 정 수 철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부속병원 회계)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교비회계] 1. 수입원 및 지출원 임면 미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6조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학교는 별도의 수입원, 지출원 임면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학교의 장이 날인한 임면장을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별도 임면할 것을 권고함. 2. 산학협력단 도서 관련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목록 상 총 3,200권이 있음. 산학협력단 연구와 관련하여 대량의 도서가 구입되었으나, 해당 도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 상 도서는 연구활동비로 처리하는 금액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지 않은 금액의 지출이 도서구입에 지출되고 있는 바, 산학협력단의 도서도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관리하면서 연구가 완료된 프로젝트의 도서의 경우 학교로 이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6조 및 우리 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27조에 의거, 내부결재 절차에 따라 재무팀장을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별도 임면(총장이 임면)할 계획임 연구활동비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하여 향후 별도의 관리자를 두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도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피감사기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 장 우 동 기	직인 (사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 회계)

